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15
----------	-------

발의연월일 : 2026. 6. 18.

발 의 자 : 정춘생 · 황운하 · 신장식
김준형 · 서왕진 · 이해민
김재원 · 박은정 · 강경숙
백선희 · 김선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르도록 하면서,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하여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근무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도 인사관리상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도서·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자 함(안 제25조 단서).

법률 제 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단서 중 “양육자 등에 대한”을 “양육자, 도서·벽지 근무자 등에 대하여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